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⁴ A61K 9/22	(11) 공개번호 특 1988-0003617
	(43) 공개일자 1988년 05월 28일
(21) 출원번호	특 1987-0010376
(22) 출원일자	1987년 09월 18일
(30) 우선권주장	8622482 1986년 09월 18일 영국(GB)
(71) 출원인	8708011 1987년 04월 03일 영국(GB) 런던 스쿨 오브 파머시 인노베이션스 리미티드 프란시스 피시, 브라이언 데이비드 로버츠
(72) 발명자	영국, 런던 더블유씨1엔 1에이엑스, 브룬스빅 스퀘어 29-39 존 마이클 뉴튼
(74) 대리인	영국, 런던 에스더블유3, 브리튼 스트리트, 브리튼 하우스 16 제인 엘리자베스 듀버룩스 영국, 런던 에스더블유 15 6유이, 브라이어 워크, 섬머셋 릿지 18 김윤배

심사청구 : 있음

(54) 경구용 고형제형과 그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경구용 고형제형과 그의 제조방법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내에 있는 동안 방출조절성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와 약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적어도 하나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를 함유하고 있고, 최소크기가 적어도 2mm이며 인체내로 경구투여 시키기에 적합한 경구용 고형제형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는 그 밀도가 적어도 2g/ml임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용 고형제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밀도는 적어도 2.5g/ml인 제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밀도는 적어도 2.7g/ml인 제형.

청구항 4

제1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밀도는 6g/ml이하인 제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는 평균크기가 적어도 약 1mm인 제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캡슐이거나 분해가능한 정제로서 여러개의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들로 되어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들은 그 평균크기가 약 1mm 내지 약 2mm인 제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들은 평균직경이 약 1mm 내지 약 2mm인 구형화된 펠릿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그 최대크기가 약 5mm 내지 약 25mm이며 최소크기가 약 10mm이하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최대 크기가 약 5mm 내지 약 25mm이고 최소크기가 약 10mm이하인 정제형의 단일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방출조절성 유니트에 함유되어있는 상기 담체는 밀도가 적어도 약 0.3g/ml인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제를 상기 유니트의 중량비로 약 50% 내지 약 95%로 함유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제는 바륨 설페이트나 페러스 옥사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결합제는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방출조절성 유니트 둘레를 코팅시킨 방출조절성 피막으로 되어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은 소화관 및 대사성 약제, 심장혈관 약제, 혈액 및 응고제, 신경제, H₁ 길항제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는 약제들로부터 선택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은 프로스타글라딘인 제형.

청구항 16

밀도가 적어도 2g/ml인 제형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중량제와, 유니트가 인체 위내에 있는 동안 상기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기에 충분한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를 약제 유효성분과 혼합시켜서 최소크기가 적어도 2mm인 약제제형을 제조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개의 유니트들을 결합시켜서 약제제형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7

최소크기가 적어도 2mm이며 위내에 있는 동안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와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적어도 하나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이루어지는 고형 제형을 경구투여시킬때 인체의 위내에서 유효성분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밀도가 적어도 3g/ml인 중량제 적어도 50중량%를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혹은 상기 각각의 유니트내에 혼합시켜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 유니트의 밀도를 2g/ml이상으로 증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 위 내에서 유효성분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